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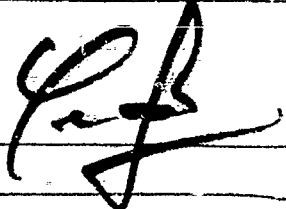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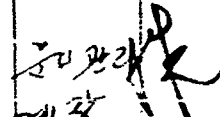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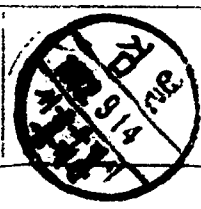


공공

9월  
1969. 9. 26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법무 181.760	(전화번호 3 0 7 )	전결규정	조항
처리기간	제 1 부 시 장		전결사항	
상행일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기획관리관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시정서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시정서           </div> </div>			
보존년월				
보조 기 기				
기안책임	강 성 희	조	<div style="text-align: center;">               기획관리관           </div>	
경유 수신 참조	과 안 참 조	발 신	통 계	
제 목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양성화추진위원회규정폐지			
<p>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양성화추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대책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공번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무허가건물양성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무허가건물대책위원회에 통합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하기 위하여 별안과 같이 폐지하고자 합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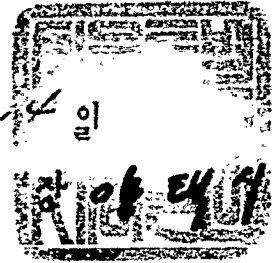
( 훈 령 안 )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양성확진위원회규정을 마에 폐지한다.

1972년 8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양성확진위원회규정 폐지

1970년 6월 1일자 서울특별시 훈령 제306호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양성확진위원회규정을 이에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2년 8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양성화추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대책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금번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무허가건물양성화추진위원회 의 기능을 무허가건물대책위원회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 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무허가건축물양성화추진위원회규정

1970. 9. 1 훈령 제308호

제1조(목적)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추진에 관한 효율적인 방안을 시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무허가건축물양성화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2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무허가건축물양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2. 불량건축물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3. 대지분양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책수립
4. 기타 양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1)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도시계획국장이 된다.

(2) 위원은 기획과장, 법무과장, 예산과장, 건축 제1과장, 도시계획과장, 사회과장, 녹지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급수과장, 청소 제2과장이 된다.

제4조(본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외 본과위원회를 둔다.

1. 건물 개량본과위원회
2. 대지분양대책본과위원회

(2) 건물 개량본과위원회 위원장은 건축 제1과장 대지분양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관제과장이 된다.

(3) 본과위원회의 배정권은 위원장이 갖는다.

제5조(집행반설치) (1) 건축물의 개량지도와 개량사업에 관한 사무적인 조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물 개량집행반을 둔다.

(2) 건물 개량집행반에 반장을 두되 반장은 건축 개량계장이 된다.

(3) 건축 계량집행반은 건축 제1계장, 예산제2계장, 도로계장및 하수 시설계장이 된다.

제6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과 반장이 각각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또는 반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또는 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건의및보고) (1)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2) 본과위원회및 집행반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서기) (1) 위원회 본과위원회및 집행반이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와 서기는 시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 (시행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 법무부장

제목 시보 기재 의뢰

아래와 같이 시보 기재를 의뢰하오니 이를 기재하시오 그  
결과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보 게재구분 **순형**

2. 시보 게재건명 **나오름변이우리가건을 양녕화주권위원회 규약 제2**

첨부 : **순형** 본 2부 끝.

국 문 부 편 시

법부 181.

72.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공포 통지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므로 통지함.

번호	공포 년월일	건 명
		다음과 같이 부속가건을 영남화 주식회사의 유상 배지

첨부: **정각** 문 1 부 끝.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않음)

서 울 부 편 시 장

수신처: 서실 1-4, 서국 1-11, 서과 1-58, 서정. 1-9, 서울 1-98,

광동, 전소속기관

서 울 법 률 시

개량 181-1236

72. 8. 29

주신 법무과장

제목 위원회 정비

1. 별무 181-173 ( 72. 8. 25 ) 와 관련 입니다.

2. 당과 위원회 정비안에 대하여 겸의 위원회 심의 결과 별첨과 같이 작성

제출 하오니 정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폐지공포안 2부

2. 개정공포안 3부

3. 폐지사유 3부

4. 개정 사유 3부

5. 포문 대비포 3부

6. 위원회 규정 전본 3부 끝

개 량

과



0400



특허법 공포안

서울특별시 무형가건물 양성과 추진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서울 특별시장

1978. 8. .

서울특별시 무형가건물 양성과 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1978. 9. 1

훈령제 308호 서울특별시 무형가건물 양성과 추진 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칙 시행한다.

폐기 사유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유산 양성과 추진 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유산 진흥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 소유자는 유산관 직무

과장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유산 진흥 위

원회에 양성과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법안과 같이 폐지

합니다.

계 정 공 포 안

서울특별시 부속기관인 대한위원회 규정중 개정 규정을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2. 8. 1

서울특별시 훈령 제 309 호

서울특별시 부속기관인 대한위원회 규정중 개정 제 22 조 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2 조 ( 제 4 ) 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가. 부속기관인 대한위원회의 정관 심사에 관한 사항

나. <sup>심사</sup>심사위원회의 정관 심사에 관한 사항

다. 심사위원의 구조에 관한 사항

라. 출생연도를 정함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책 수립

마. 기존 부속기관인 대한위원회 정관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양성과 업무 및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속기관인 대한위원회에 시행한다.

조선학 조선학 대 비 표

제 2 조 (직무) 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가. 부속 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

나. 임기연의 정액에 관한 사항

다. 임기연 구오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위원회의 직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조 (직무) 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가. 부속 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

나. 임기연의 이주 및 정액에 관한 사항

다. 임기연 구오에 관한 사항

마. 부속 기관의 기항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 및 다채 수당

바. 기존 부속 기관 정액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임성과 업무 및 위원회의 직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계 정 사 유

서울특별시 무어가 건물 대적 위원회와 양성과 추진 위원회는 무어가 건물 정비  
하는 유사한 직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양성과 추진위원회  
를 폐지 하므로 서울특별시 무어가 건물 대적위원회에 통합 운용기 위하여 법안  
과 같이 보강 하였습니다.

3. 위원회 규정 전문

70. 9. 1. 훈령제 319호

제1조 ( 목적 ) 무허가 건축물의 통폐합인 철폐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방안은 시장에게 권의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물 다(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 를 둔다.

제2조 ( 직무 )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 1. 무허가 건축물의 철폐처리에 관한 사항
- 2. 철폐처리의 청산대책에 관한 사항
- 3. 철폐처리 구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 조직 ) 1. 위원회의 위원장을 두되 도시계획국장이 된다.

- 2. 위원은 기획과장, 예산과장, 총재과장, 건축 제1.2과장, 사회과장,  
보건제1과장, 관리제2과장, 운수제1과장, 시설과장이 된다.

제4조 ( 소집과 심의 ) 1.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 ( 권의 )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권의 하여야 한다.

제6조 ( 감사와 서기 )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감사와 서기를 둔다.

- 1) 감사는 건축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 제1과 직원중에서 시장이



## 분양 계획 분과 위원회

2) 건물 개발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건축 제1과장 대지부장 및 위원회 위원장은  
은 관제 과장이 된다.

3) 분과 위원회 비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 집행 관 설치 ) 1) 건물의 개발지도와 개발사업에 관한 사무적인 조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물 개발 집행관을 둔다.

2) 건축 개발 집행관에 부장급 두되 부장은 건축 개발 과장이 된다.

3) 건축 개발 집행관원은 건축 제1과장, 예산계장, 도도계장 및 하수시설  
과장이 된다.

제6조 ( 회의 ) 1) 회의는 위원장과 부장이 주관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직위원 또는 부원과 관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또는  
부원과 관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7조 ( 권의 및 보고 ) 1)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정에게 권의하여야 한다.

2) 분과 위원회 및 집행관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 감사와 서기 ) 1)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집행관이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감사와 서기 약관을 둔다.

제9조 ( 시행세칙 ) 위원회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